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및 산정방법(제7조 관련)

1. 국고의 추가 지원 기준

판단기준	등급별 구분	추가지원액 기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최근 3년 평균 재정력지수	0.1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6.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1 이상 0.2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8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8.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2 이상 0.4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0.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4 이상 0.6 미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2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2.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0.6 이상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지방비 총부담액 - 14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 - 14.25억원) × 국고 추가지원율

비고: “읍·면·동의 지방비 총부담액”이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읍·면

· 동 지역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해당 읍·면·동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부담하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을 말한다.

2. 국고 추가 지원을 산정방법

국고 추가 지원율 = ①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7 +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 0.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① 재정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8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77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74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71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8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2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59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56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53퍼센트
1.0 이상	50퍼센트

② 재해예방 노력지수에 따른 추가 지원율

재해예방 노력지수	추가 지원율
0.1 미만	50퍼센트
0.1 이상 0.2 미만	53퍼센트
0.2 이상 0.3 미만	56퍼센트
0.3 이상 0.4 미만	59퍼센트
0.4 이상 0.5 미만	62퍼센트
0.5 이상 0.6 미만	65퍼센트
0.6 이상 0.7 미만	68퍼센트
0.7 이상 0.8 미만	71퍼센트
0.8 이상 0.9 미만	74퍼센트
0.9 이상 1.0 미만	77퍼센트
1.0 이상	80퍼센트

비고: 재해예방 노력지수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등을 반영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계산한다.

1. 재해예방 노력지수 =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0.9 +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0.1
2. 재해예방사업 투자율 = 재해예방사업 투자비 ÷ 보통세

3.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 확보액 ÷ 법정적립금

4. “재해예방사업 투자비”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 결과, 법 제58조에 따른 재난 피해상황 조사 결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각 호의 계획 수립의 적절성,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내진보강대책과 그 추진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감률을 말한다.